#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주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1

발의연월일: 2024. 6. 25.

발 의 자: 박주민·서미화·박지원

정을호 • 이성윤 • 임호선

황명선ㆍ김 윤ㆍ김병주

곽상언 · 부승찬 · 윤준병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음.

이로 인해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불출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, 청문회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제 기능을 약화시킴에 따라 국 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실추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실정임.

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의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1항).

또한,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거짓 보고를 하거 나 거짓 서류등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고, 위원회 활 동기한이 종료된 경우 위증 등에 대해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안건심의 및 국정감사·조사 및 청문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국회에서의 증언 ·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1항 중 "국정감사나 국정조사"를 "국정감사·국정조사 및 청문회"로 한다.

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등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15조제1항 본문 중 "제12조·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"을 "제12조, 제13조,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또는 제4항"으로 하다.

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제 14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의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증인에 대한 동행명령) ①	제6조(증인에 대한 동행명령) ①
<u>국정감사나 국정조사</u> 를 위한	국정감사・국정조사 및 청문회
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	
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	
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	
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	
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	
령할 수 있다.	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4조(위증 등의 죄) ①・② (생	제14조(위증 등의 죄) ①・② (현
략)	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③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
	요구받은 자가 거짓 보고를 하
	거나 거짓 서류등을 제출하였
	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
	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
	의 벌금에 처한다.
제15조(고발) ① 본회의 또는 위	제15조(고발) ①
원회는 증인·감정인 등이 <u>제1</u>	<u>제12</u>
2조・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	조, 제13조, 제14조제1항 본문
<u>본문</u> 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	<u>또는 같은 조 제3항</u>
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. 다	
만,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	

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수 있다.

②·③ (생 략) <신 설>

④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,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한다.

,	
②・③ (현행과 같음)	
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	
고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	
되어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	
같은 조 제3항의 죄에 대하여	
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	
우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	
에 따라 그 의원의 이름으로	
고발할 수 있다.	
⑤ 제1항 또는 제4항	